

대구지방법원 2021. 11. 12 선고 2020가단14356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윤호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류강

담당변호사 강영구,류상현,이주영

변 론 종 결 2021. 10. 8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2.

주 문

1.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9. 7. 26. 체결된 매매계약을 122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
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12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
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신용보증약정의 체결

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고 한다)가 D은행 및 E은행으로부터 받는 각 대출금에 관하여,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신용보증약정(이하 ‘이 사건 신용보증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위 각 은행으로부터 총 55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보 증 번 호	보 증 일 자	보 증 기 한	보 증 금 액
F	2017. 5. 31.	2018. 5. 30. (이후 2020. 5. 29.로 연장)	360,000,000원 (대출금의 90%)
G	2019. 4. 19.	2020. 4. 17.	135,000,000원 (대출금의 90%)
총 2건	합 계		495,000,000원

그리고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원고와 약정하였다.

나.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

소외 회사는 2020. 1. 7. 신용의 악화로 위 각 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,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20. 4. 24. E은행에 137,438,616원(원금 135,000,000원 + 이자 2,438,616원)을, 2020. 5. 21. D은행에 345,988,945원(원금 340,000,000원 + 이자 5,988,945원)을 각 변제하였다.

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회사와 B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권(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)을 갖게 되었다.

다. 2019. 8. 2. B은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9. 7. 26.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)를 마쳤고, 피고는 2019. 8. 2.2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,900,000원, 채무자 피고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

라. 2021. 6.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22,000,000원 상당이다.

[인정 근거] 이 사건 시가감정결과,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호증 내지 8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서증을 언급할 때 가지번호를 포함한다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 장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자로서 B이 채권자의 채권만족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를 할 경우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.

그런데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 주식회사 H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현물반환이 곤란

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22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에게 12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1) 피보전채권의 부존재

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성립되지 않았고,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없었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으로 볼 수 없다.

3. 판 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대한 판단

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2017. 5. 31.과 2019. 4. 19. 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인 2019. 7. 26.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2020. 1. 7.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.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B의 무자력에 대한 판단

고령군수의 사실조회회신과 I기관의 신용정보조회회답서의 기재에 따르면 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적극재산이 없었고, 은행 등에 1,202,541,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.

따라서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력의 부족상태가 더욱 심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다. 피고의 선의에 대한 판단

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고,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와 피고가 B

의 장모로서 B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.

라. 소결론

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 피고가 주식회사 H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원상회복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함이 타당하다.

이 사건 시가감정결과에 따르면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22,000,000원 상당이므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122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신종화

<별지>

부동산의 표시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상북도 고령군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 : 호 59.85㎡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위 대 17698㎡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17698분의 26.048 -끝-

